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 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 
2024. 9. 4(수) 10:00

## 제25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한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 
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 
(교통건설국 건설행정과 소관)



복지건설위원회  
전문위원 추병수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597호
- 나. 제 출 자 : 정재동 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4. 8. 22.
- 라. 회부일자 : 2024. 8. 22.

## 2. 제안이유

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과 녹색성장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.
- 나.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.
- 다.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과 재정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4조 및 제5조).
- 라. 교육 및 홍보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6조).
- 마.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7조).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4조,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제7호가목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제7호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- 다. 입법예고 : 2024. 8. 23. ~ 2024. 8. 30.

## 5. 검토의견

### 가. 제정 이유

본 조례안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으며 총 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### 나. 주요 내용

#### 1)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.

-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
- “친환경 소재”란 생분해, 산화생분해,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여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, 에너지·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

#### 2)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.

-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책무를 규정
-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 수립·시행
-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 지원

#### 3)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과 재정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4조 및 제5조).

-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
-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,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

#### 4) 교육 및 홍보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6조).

#### 5)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7조).

#### 다. 검토 의견

- 본 조례안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자원순환 및 환경오염 저감을 통해 탄소중립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# 관계법령

## □ 환경정책기본법

[시행 2024. 1. 1.] [법률 제19208호, 2022. 12. 31., 타법개정]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·보전하기 위하여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. <개정 2021. 1. 5.>

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계획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. <개정 2021. 1. 5.>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유지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과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「국토기본법」에 따른 국토계획과의 연계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 12. 1., 2021. 1. 5.>

## □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

[시행 2024. 6. 25.] [대통령령 제34600호, 2024. 6. 25., 일부개정]

제3조(옥외광고물의 분류) 옥외광고물(이하 “광고물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. <개정 2014. 12. 9., 2016. 7. 6., 2018. 5. 28., 2019. 4. 30.>

7. 현수막: 천·종이·비닐 등에 문자·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, 지주, 게시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

## □ 폐기물관리법

[시행 2024. 1. 30.] [법률 제20172호, 2024. 1. 30., 타법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7. “재활용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.

가. 폐기물을 재사용·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·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